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0일 00시 12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대행업자의 신고사항	3

대행업자의 신고사항

2014.04.17 조회수 510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9
담당부서	수도행정과
상위법령	수도법 제38조
규칙	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18조
유형	3호 - 신고의무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18조(대행업자의 신고사항)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한 때 2.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 3.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한 때 (개정 2013. 2. 27) 4. 종사원의 이동이 있을 때 5. 그 밖에 지정신청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8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00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